



문서번호 : 16-11-백남기 변호인단-01
수 신 : 제 언론사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(단장 : 이정일)
제 목 : [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][취재요청]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
기일 안내
전송일자 : 2016. 11. 10.(목)
전송매수 : 총 4매

[취재요청]

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

(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,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)

1.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2. 11월 11일 오후 4시,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.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.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,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·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‘청문중간보고서’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.
3.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,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4.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. 끝.

별첨: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

2016년 11월 10일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
단장 이 정 일 (직인생략)

별첨 **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**

사 건 2016가합4094 손해배상(기)

원 고 박순례 외 3 명

피 고 대한민국 외 5명

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6. 11. 11. 16:00 변론
기일 절차에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.

- 다 음 -

1. 당사자 본인진술(5분 정도, 원고 백도라지)

2. 원고 측 프리젠테이션 변론(15분 정도, 오현정 변호사)

<프리젠테이션 목차>

- 1. 이 사건의 경위
 - 가. 2015. 11. 14. ‘민중총궐기’ 대회
 - 나. 고(故) 백남기의 집회 참여
 - 다. 갑호비상명령, 차벽, 살수차
- 2.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
 - 가. 살수차의 위험성
 - 나. 살수차 운용 관련 법령

<p>다. 고(故) 백남기에 대한 위법한 살수</p> <p>라.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인정</p> <p>마. 이 사건 살수의 위법성에 관한 경찰 주장의 문제점</p> <p>3.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</p> <p>가. 지침의 위법성·비합리성</p> <p>나. 직사살수 부분의 헌법적 문제점</p> <p>4. 결론</p>
--

3. 피고 측 변론(15분 정도)

4. 원고 측 입증계획에 관한 의견(1분 정도, 이정일 변호사)

- 2016. 8. 24.자 현장영상 제출에 관한 구석명신청 사항에 관한 촉구
- 2016. 11. 3.자 구석명신청(피고 대한민국)
- 피고 한석진, 피고 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
- 기타(살수차 관련 구석명 및 의무기록감정촉탁신청 등)

2016. 11. 8.

故 백남기 변호인단 일동(보도의 편의상 각 참여변호사 생략함)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귀 중